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단1524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유병일, 전수려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3. 1. 11.

주 문

1. 피고와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13. 체결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1. 4. 13. 접수 제1847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를 운영하는 B과 2018. 6. 19.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보증금액	신용보증종류	보증기간	대출은행	대출금액
2억 8,500만 원	대출보증	2018.6.19. -2019.6.18.	D은행	3억 원

나.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8. 6. 21. 3억 원의 은행대출을 받았는데, 2019. 6. 11. 사전구상권이 발생하고 2021. 4. 14. 국세체납 등으로 인한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21. 11. 5. 대출은행에 대출원리금 289,592,762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며, 원고는 B에 대하여 292,158,353원(= 위 신용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289,592,762원 + 위약금 868,270원 + 대지급금잔액금 1,697,321원) 및 그중 289,592,762원에 대한 2021.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다. 한편, B은 2021. 4. 13.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인 E의 피고에 대한 기계렌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B은 2021. 4.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1. 4. 13. 접수 제18475호로 피고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1. 4. 13.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실제로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8. 6. 19. 이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실제로 2021. 11. 5. 원고의 대위변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렌탈회사인 피고가 렌탈약정의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서 그 상대방인 피고로서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에 있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석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안성시 F
전 1261㎡

2. 경기도 안성시 F에 있는
G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성시 H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492.8㎡

3. 경기도 안성시 I
전 63㎡. 끝.